

2023년 창업기업 국제 투자유치 촉진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해외 액셀러레이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내 유망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육성을 위한 『2023년 창업기업 국제 투자유치 촉진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4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라북도 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중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 모집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센터 관리기업*

('16. 5. 13. 이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모집기간 : 2023년 6월 14일(수) ~ 6월 22일(목) 18:00까지(9일간)

□ 선정규모 : 총 16개사 내외(사후관리기업* 20% 내외 선발 예정)

* 2020~2022년 글로벌 벤처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기관 : 씨엔티테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시장분석 및 글로벌 진출 전략수립- 국내 IR자료 제작 및 컨설팅- 제품 특허분석 지원- 1개국 진출 항공비(100%) 및 체제비(50%) 지원(기업당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진출 역량 점검·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진출 IR자료 고도화 및 영어피칭교육- 글로벌 2개 지역(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현지or온라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미국, 베트남 외 투자자 온라인매칭 지원예정

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대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기관(씨엔티테크(주))이 운영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3년 11월 30일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품 시장분석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제품 특허분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아이템 고도화 -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 사전대응(전라북도 창업펀드 운용사 연계)
해외진출 IR자료 고도화 및 영어 피칭교육	글로벌 2개 지역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최적 IR Pitch Deck 제작 - 모의프레젠테이션을 통한 Pitch Deck 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 진행 - 현지 투자자 매칭 상담 운영 - 해외 왕복 항공료 100%, 체재비 50% 지원 (기업당 1인)

○ 글로벌 진출 역량점검 인터뷰

- 글로벌 진출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기업 역량점검 인터뷰 진행
- 기업별 선호 진출지역과 사업 아이템 간 매칭, 해외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등 기업 수요 사전진단

○ 제품 시장분석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
- 타겟고객 · 시장 정의 및 분석, 사업성 분석, 자문

○ IR자료 제작 및 고도화, 영문 피칭교육

- 국내 IR자료 제작 및 컨설팅
- 해외 IR자료 고도화, 모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Pitch Deck 수정·보완 및 영문 피칭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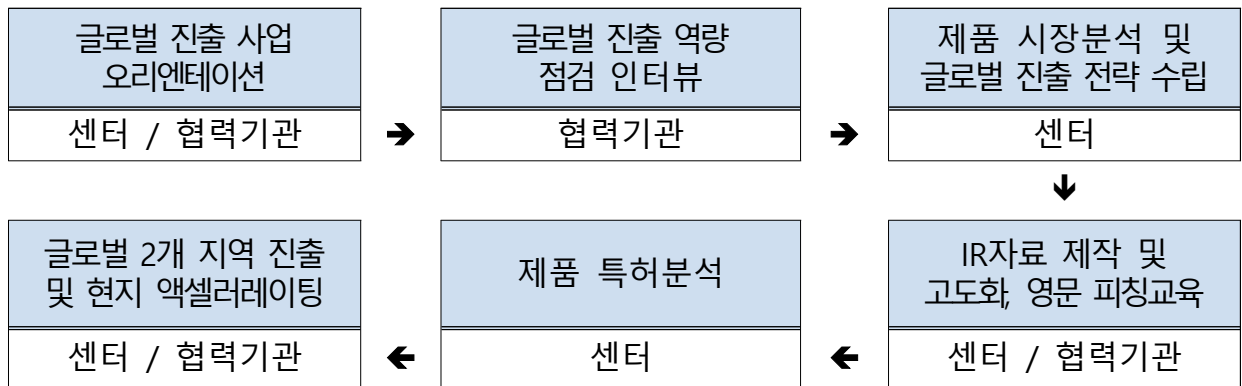
○ 제품 특허분석

- 신기술개발, 특허 등록, 특허분쟁 대비,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대응
- 기업 및 IP 관점의 단계별 맞춤형 투자와 선도적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제시
- 전라북도 창업펀드 운용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우수기업은 향후 창업펀드로 투자연계 가능)

○ 글로벌 2개 지역(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진출 및 현지 액셀러레이팅

- 현지 체류형 글로벌 진출 전략 프로그램 운영 예정 (5박 7일 일정)
 - 프로그램 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터 연계 및 스타트업 관련 행사 참여, 네트워크 구축
 - 진출 국가별 현지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 및 특강 1회
 - 기업별 투자자 3인 이상 매칭 상담 운영
 - 해외 법인 설립 지원 및 유통·판매경로 연계
 - 조인트 벤처 및 협업을 위한 해외 업체 연계
 - 지원내용
 - 기업 당 1인 왕복 항공료 100% 제공
 - 기업 당 1인 체재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50% 지원(자부담 50%)
 - 해외 프로그램 통역제공
- ※ 온라인 대체프로그램으로 변동가능하며, 지원내용은 진출 희망 1개 지역에 대한 사항임.(추가적인 해외진출 희망에 따른 발생 비용은 100% 기업 자부담)
- ※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미국, 동남아시아 외 투자자 온라인매칭 지원예정.

□ 추진일정



※ 코로나19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변동될 수 있음.

I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센터 관리기업('16. 5. 13. 이후)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제외대상

※ 각 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기 참여기업(2020~2022년 글로벌 벤처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중에 중도 사업 포기한 기업
- 타 기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동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23 .6 .22.) 이후인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인 기업
※ [참고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IV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4일(수) ~ 6월 22일(목) 18:00까지
- 접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투자글로벌팀 이메일 제출
【E-mail : lty0918@ccei.kr】
- 신청문의 : 혁신투자글로벌팀, 063-220-8924, lty0918@ccei.kr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이메일 제출

<신청 절차>

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접속 → ② '새소식' 메뉴 선택 → ③ <공고번호 2023-111> 2023년 창업기업 국제 투자유치 촉진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택 → ④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⑤ 신청서 작성 → ⑥ 혁신투자글로벌팀 이메일 제출(첨부파일형식 PDF)
※ 메일제목 : 예)창업기업 국제 투자유치 촉진사업 신청_기업명
첨부파일명 : 예)참여신청서_홍길동.pdf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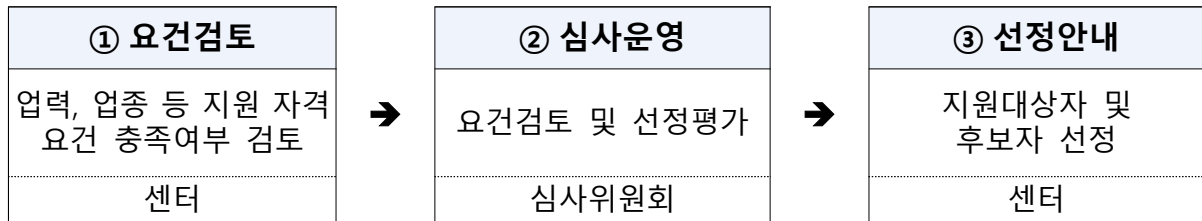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각 분야별 작성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개인 사업자등록증(계속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계속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0~2022년도	
5	■ 실적자료(매출, 수출, 고용, 투자 등)		2022년도	
6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택	해당자	

V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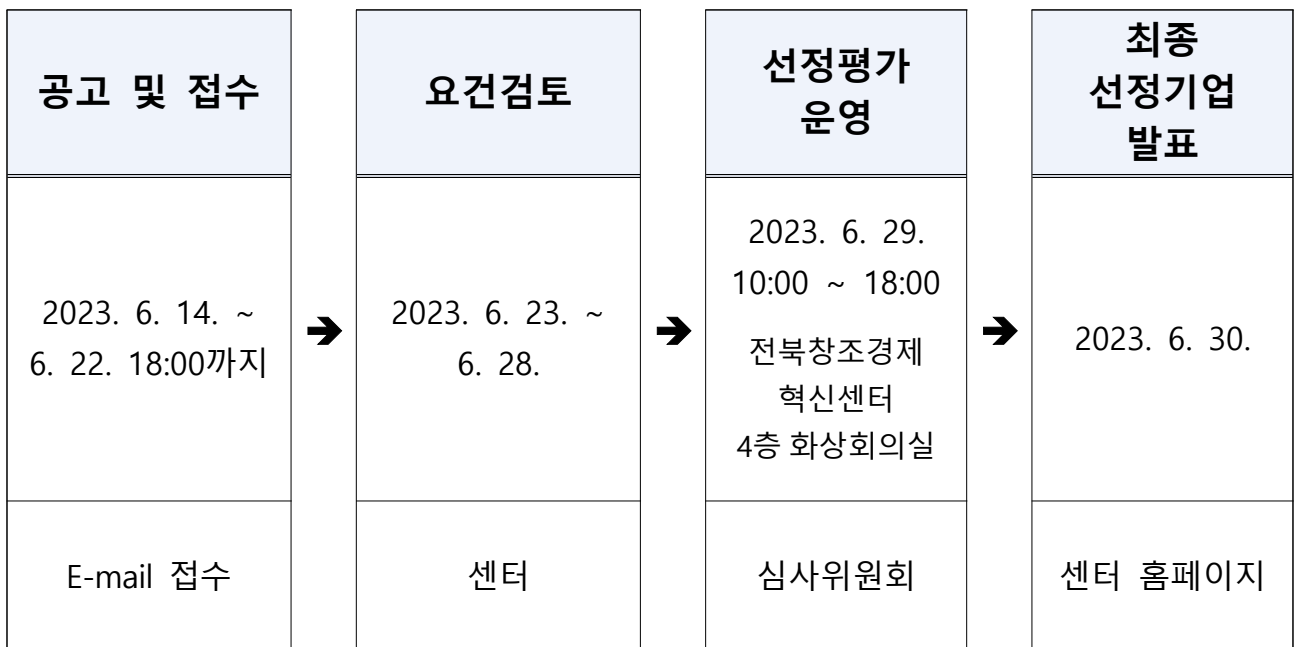
< 심사 및 일정 >



-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심사운영) 경제성 및 사업화 효과, 사업계획 적정성, 파급성, 중복 지원 검토 등을 평가
- ③ (선정안내)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선정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사업 신청접수 시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서류심사 및 인터뷰 진행 예정

V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접수처와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서류심사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심사는 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도가 낮거나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16. 05. 13. 이후)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불인정		
			동종창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이종창업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 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 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2**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